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 금년 9월 15일 시행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1. 9. 처음 제안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 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 3. 14.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9. 1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 평가받는 데,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1. 배경

2011년 처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면서 법률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증대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2021. 9.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의결되었고,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시간이 흘러, 위 개정안은 2022. 12. 5.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2023. 2. 16.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 7.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왔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20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서, 최초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 등 다양한 최신 기술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규제할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분류	항목	내용
관련 산업 촉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신설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 가능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영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규정을 일반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규정으로 통합 국내대리인 지정 등 특례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변경 불필요한 특례 규정 삭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외 이동형 카메라 규제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 등 규정
정보주체 권리강화	개인정보 처리 요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 일변도의 처리 요건 개편 동의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요건 정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 위해 공중위생 요건 등 추가
	AI 등 관련 정보주체 권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등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미칠 시 거부권·설명 요구권 등 부여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 제재
해외 관련규정 반영	국외이전 규정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형벌 정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변경하고 위반행위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변경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 확대,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시 위탁자 동의 필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실태점검 등의 규정이 신설·개편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후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시작했는데,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 4. 기준 관련 서비스 전체 가입자 수가 2,596만 명에 달하고, 데이터 전송 건수는 약 125억 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법과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금융·공공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일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통·활용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료·전자상거래 등 여러 다양한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신사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징금과 관련된 대응에 산업계의 더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현행법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가 과징금의 상한액이지만, 위 개정안 통과로 인해 전체 매출액의 3%가 원칙이 되었으며,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예외적으로 제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상한액수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당국에서 관련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을 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액수부터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전체 매출액의 3%이기 때문에, 특정 매출액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다고 입증해야 할 당사자가 사업자가 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당국의 조사가 있을 시 사업자의 증명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규제 통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을 특례규정으로 추가만 해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온오프라인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국외정보 이전에 대한 규제와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 등 EU GDPR 과 같은 해외의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이렇듯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이 마무리 된 만큼, 새로운 규제에 의한 새로운 리스크를 대비할 시점입니다.

화우는 개인정보/정보보안, 방송정보통신, 메타버스, 신기술, 환경규제, ESG 등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적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이수경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132

E. sgyi@yoonyang.com

정호선

변호사

T. (+82) 2 6182 8548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